研究調査資料 98-5

MAI協商의 進展과 國內保險産業에의 示唆点

1998. 8

鄭 榮 喆
韓 星 眞

保 險 開 發 院
保險研究所

序 言

1990년대 이후 外國人直接投資는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명실상부한 國際規範은 사실상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강력한 구속절차에 의해 뒷받침되는 국제협정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OECD에서는 지난 1995년 9월부터 多者間投資協定(MAI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이 협상은 한차례 타결시한을 연기한 끝에 1998년 4월 각료이사회시까지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으나, 일부 쟁점사안에 각국의 이견으로 인해 타결시한이 다시 6개월 연장되었다. 그러나 국제투자규모에 걸맞는 투자규범의 제정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각국이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향후 타결전망은 樂觀的이라고 할 수 있다.

MAI는 설립후 및 설립전 단계 모두에 적용되는 구속적인 紛爭解決節次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가 규정하는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이외에도 투자가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도 두고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부문의 경우 그동안의 지속적인 市場開放措置에도 불구하고 制度 및 慣行上 내외국인간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 MAI가 발효될 경우 선진금융제도 및 관행에 익숙한 외국투자가에 의한 제소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MAI는 우리에게 도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를 우리의

투자자유화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MAI의 내용과 보험산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업계 및 정책당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시장개방노력의 결과로 시장진입과 관련한 法的 內國民待遇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상의 경쟁제한요소와 같은 事實的 內國民待遇 여부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시장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에서는 국내외 보험회사간의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투명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내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보험회사들의 경우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상실은 곧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므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자사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경영전략의 구사를 통하여 경쟁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鄭榮喆 선임연구원과 韓星眞 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다. 그러나 본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본원 내부의 원고검토자로서 충실한 검토를 해준 李基亨 선임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筆者들의 個人的 意見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8年 8月

保 險 開 發 院

院長 金 勝 濟

<目　　次>

Ⅰ. 序論 1

Ⅱ. MAI協商의 推進經過 및 主要內容 5

1. 推進經過 5

가. OECD에서의 推進經過 5

나. 우리나라의 MAI 協商 參與經過 6

2. MAI의 主要內容 7

가. MAI의 特徵 7

나. MAI의 構成 10

다. MAI의 主要內容 12

3. 協商爭點 24

Ⅲ. 國內保險産業의 MAI 關聯事項 27

1. 市場接近(Market Access)上의 障碍要因 27

2. 營業活動上의 障碍要因 29

가. 판매채널의 制限 29

나. 獨占的 保險서비스 供給機關의 存在 33

다. 資金調達方法의 規制 34

라. 商品開發의 制限 36

마. 損害保險 共同引受協定 37

Ⅳ. 進入規制와 外國社 市場占有率과의 關係 39

1. OECD 會員國別 外國社 市場占有率 39
2. 進入規制와 外國社 市場占有率과의 關係 40

Ⅴ. 向後展望 및 示唆点 46

1. MAI協商 妥結以後 外國人의 投資展望 46
2. 示唆点 48

< 參 考 文 獻 > 51

<附錄 1> 多者間投資協定文(MAI)(案)의 主要內容 53

<附錄 2> 主要國의 保險會社 設立許可基準 64

<表目次>

<表 Ⅰ-1> MAI와 其他 國際規範과의 比較 3
<表 Ⅱ-1> MAI(案)의 構成 11
<表 Ⅱ-2> MAI의 主要內容 26
<表 Ⅲ-1> MAI關聯 國內保險制度 28
<表 Ⅲ-2> 生命保險 판매채널별 初回保險料 比重 推移 30
<表 Ⅲ-3> 유럽國家 個人生命保險 판매채널별 市場占有率 31
<表 Ⅲ-4> 生命保險市場의 市場集中度 推移 32
<表 Ⅲ-5> 損害保險 판매채널별 收入保險料 比重 推移 32
<表 Ⅲ-6> 公營保險 運營現況(1996年度) 33
<表 Ⅲ-7> 主要國의 資金調達規制 現況 35
<表 Ⅲ-8> 新商品 認可實績 推移 36
<表 Ⅲ-9> 損害保險 共同引受協定 現況 38
<表 Ⅳ-1> OECD國家別 外國社 市場占有率 推移 39
<表 Ⅳ-2> 外國事業者에 대한 進入規制 및 EU 加入與否에 따른 區分 .. 41
<表 Ⅳ-3> 그룹별 外國社 平均市場占有率 43
<表 Ⅳ-4> EU加入與否와 規制의 差異에 따른 母集團 順位表(生命保險) 44
<表 Ⅳ-5> EU加入與否와 規制의 差異에 따른 母集團順位表(損害保險) . 44

Ⅰ. 序論

1990년대 들어 경제의 자유화·개방화가 범세계적으로 진전되는 가운데 외국인투자 규모가 급증하고[1], 그 형태도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투자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가 보호를 위한 국제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각국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國際規範을 창설하였다. 현재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500여개의 양자간투자협정[2], EEA, NAFTA, APEC 등의 지역규범, WTO의 TRIMs/GATS[3] 등의 국제규범이 있으나 이들은 포괄범위나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 해외투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법적 장치로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또한 OECD의 양대 자유화규약[4]과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5]도 OECD 회원국만을 주대

---

1) UN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의 直接投資額은 1995년에 3,149억달러에 달해 전년도에 비해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1980년대초 200억달러 정도에 불과했던 규모에 비하면 15배이상 높아진 것임.

2) MAI와 양자간투자협정의 가장 큰 차이는 MAI의 경우 投資自由化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임. 양자간투자협정의 경우는 투자후단계의 투자보호에 대한 규범이며, 투자자유화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또한 투자보호에 있어서도 MAI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투자의 모든 단계에 적용하며 법률적 차별 및 사실상 차별을 모두 금지하여, 보다 충실한 투자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3) TRIMs는 WTO의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중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을 말하며 GATS는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을 지칭함.

4) 1961년 12월 OECD 이사회가 결정한 대표적인 규범으로서 국가간 서비스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 의무를 정하고 있는 "經常貿易外去來自由化規約" 및 "資本移動自由化規範"을 말함. MAI는 이러한 기존의 OECD 양대규약 및 내국민대우 규정을 통합하고 투자자유화 및 보호수준을 높이는 의미가 있음. 구체적으로 보면, MAI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구속적인 일반규범화하고 있으며, 이들 의무를 넘어선 추가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기존의 규범에 없던 투자보호 규정도 두고 있음. 또한, 기존 OECD규범과는 상이하게 구속적인 분

상으로 하는 데다 구속력이 미약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강력한 구속절차에 의해 뒷받침되는 국제협정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의 주도하에[6] OECD를 중심으로 WTO와 같은 폭넓은 회원국들의 참여와 강력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회원국들의 협정이행을 담보하는 多者間投資協定(MAI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을 창설하자는 논의가 추진되게 되었다.

MAI는 투자의 시행, 확대, 유지, 청산 등 투자의 모든 측면에서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內國民待遇 및 最惠國待遇의 適用을 기본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즉, MAI 하에서는 외국인투자를 국내투자에 비해 차별하는 모든 법적·사실적 조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MAI체제로의 이행이 투자의 포괄적 정의로 인해 금융산업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쟁해결절차를 두어 의무이행의 강제력을 확보하였음.

5) 주로 多國籍企業의 營業活動自由化를 보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된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관한 선언"으로서 1991년까지 세차례 개정된 바 있음. 이는 양대 자유화규범과 함께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보장하는 OECD 3대 규범으로 불리기도 함.

6) 사실상 MAI의 추진을 주도한 것은 미국으로 이는 자국의 양자간투자협정, NAFTA 투자협정과 같은 성격의 협정을 다자체제로 확대하려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임. 여타국가의 양자간협정이 투자보호에만 국한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협정은 투자 전단계에서의 내국민대우규정을 통해 사실상 市場接近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表 Ⅰ-1> MAI와 其他 國際規範과의 比較

	OECD규범	WTO협정	MAI
대상국	29개 회원국	130개국	OECD 회원국 등 가입희망국
발효일	1996.12.12(우리나라)	1995.1.1	1999년 예정
적용대상	무역, 금융, 투자 등	무역, 금융, 투자, 지적재산권 등	투자
투자의 정의 및 범위	무역 및 상업적 주재에 대한 규약	자본이동 및 무역외거래를 대상	자산적 접근에 의한 포괄적 정의
투자보호수단	규정없음	규정없음	분쟁해결 및 손해배상
투자 자유화 원칙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분쟁해결 절차	없음(회원국의 압력)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국가 및 국가 대 개별투자가
기타		WTO체제는 1995년 1월 미완결 형태로 발족되어 출범 이후에도 협상진행 중(74건)	1998년 4월말 이전 협상타결예정이었으나 회원국간 이견으로 협상시한 6개월 연장

資料 : 구본성, 1997에서 수정.

특히 그동안의 보험시장개방조치와 경제적수요심사제도(ENT)의 폐지로 법적 차별조치는 상당부분 폐지되었으나 외국보험사의 국내진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영업활동 등과 관련한 사실상의 경쟁제한적 차별조치들에 관해서는 규제완화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향후 이들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MAI협상과 관련하여 MAI협상의 주요내용과 국내보험산업의 투자장애요인 및 타결시 예상되는 외국투자가의 투자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험업계 및 정책당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그동안의 MAI협상의 추진경과와 MAI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제Ⅲ장에서는 현재 MAI협상과 관련하여 국내보험산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관련

시장진입측면과 영업활동상의 투자장애요인을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市場進入規制가 內國市場保護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OECD 회원국들의 진입규제현황과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이들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MAI협상타결시 외국인의 投資展望과 아울러 업계 및 정책당국에 대한 示唆点을 제시하였다.

Ⅱ. MAI協商의 推進經過 및 主要內容

1. 推進經過

가. OECD에서의 推進經過

1991년 OECD 각료이사회는 투자규범을 강화·확대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자본이동 및 經常貿易外去來委員會(CMIT)와 國際投資 및 多國籍企業委員會(CIME)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CIME/CMIT 합동위원회의 보고서가 OECD 閣僚理事會에 제출되었으며, 동 보고서에서 양 위원회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투자자유화·투자보호·분쟁해결절차 등의 내용을 포괄하며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는(Free-standing) 다자간투자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OECD 각료이사회는 국제투자에 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범을 정립하기 위하여 1994년 6월 다자간투자협정의 제정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1995년 5월 OECD 이사회는 1997월 5월까지 MAI를 출범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한시적 협상그룹(NG : Negotiating Group)[7]을 구성하여 협상을 시작하였다. 협상이 개시된 이후 각 회원국들은 협정문작성을 위한 회의를 매월 개최해왔으며, 1997년 2월부터는 당시까지 완성된 협정문안을 토대로 회원국별 유보협상을 병행하여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주체인 미국에서 국내 국제투자의 활성화가 환경과 노동의 향상에 과연 보탬이 되느냐의 문제를 NGO(비정부민간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이 제기하면서 협상을 적극적으로 이끌지 못한데다 EU(유럽연합)가 역내국가에 다른 지역과는 다른

7) 협상그룹(NG)은 모든 회원국을 참가대상(WTO, IMF 등은 옵서버)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5개의 전문가그룹(Expert Group)을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그룹별 담당분야는 EG1 : 분쟁해결 및 지역별 범위, EG2 : 조세문제, EG3 : 특수의무조항, EG4 : 각종 제도사항, EG5 : 금융부문임.

MFN(最惠國待遇)을 계속 허용하는 문제와 환경, 금융서비스 등 미합의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을 모두 해소시키기에는 협상시한도 너무 촉박하였다. 또한 협정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보협상을 진전시키는 관계로 유보리스트작성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어 결국 협상시한을 1998년 4월 OECD 각료이사회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998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OECD 연례 각료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조율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데다가 주요 회원국간에 MAI 조기타결에 대한 반대의견이 대두되면서 또다시 타결시한을 6개월간 연장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OECD 내에서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MAI를 世界貿易機構(WTO)에서 다루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나. 우리나라의 MAI 協商 參與經過

우리나라는 1996년 8월 OECD 가입을 앞두고 MAI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재경원, 통산부 등 관계부처공무원으로 구성된 MAI 대책반을 설치하여 MAI 관련 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후 1996년 10월 11일 OECD로부터 공식가입 초청을 받게됨에 따라 동년 10월 제9차 협상그룹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처음 참여하였으며, 1996년 12월 OECD에 정식으로 가입함에 따라 동년 12월 개최된 제10차 협상그룹회의부터는 正會員資格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한편 1997년 3월에는 보험을 포함한 금융분야가 제외된 유보리스트를 30개 협상참가자중 27번째로 OECD 사무국에 제출하여 留保協商에 참여하였다. 이후 1997년 9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제17차 MAI 협상그룹회의에서 각국은 1997년 10월 회의 이전까지 현재까지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유보안을 수정·제출키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EU 및 일본과 양자협의를 개최하여 협정문안의 주요 쟁점 및 양국 유보안중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상하였다. 동년 10월 개최된 제18차 협상그룹회의에서는 협상그룹회의에서 논의된 유보안작성지침에 따라 지난 3월에 각국이 제출한 國別留保案[8]을 수정하여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3월에 제출한 유보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각국의 유보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국별 유보안 협상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2. MAI의 主要內容

가. MAI의 特徵

1) 廣範圍한 投資의 定義

MAI는 투자를 기존의 해외직접투자인 기업의 설립뿐만 아니라 주식, 증권, 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 동산 및 부동산 등과 이로 인한 파생권리, 지적소유권 및 사업권, 면허권, 예금 등의 법적 권리 및 청구권 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어떠한 투자규범보다도 포괄범위가 광범위하다. 즉, MAI는 협정의 적용범위를 의미하는 투자의 정의에 대해 이른바 '資産接近方式'[9]을 택함으로써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투자의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다. 예를 들어 보험산업의 경우

---

8) MAI의 유보안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은 각국이 현재의 투자제한조치를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한다는 것(現狀凍結 : standstill)과 이러한 투자제한조치를 향후에 지속적으로 줄여간다는 것(漸進的 自由化 : rollback)임. 이에 따라 MAI국별유보에 대해서는 향후 투자제한의 완화는 가능해도 투자제한의 확대는 불가능함.

9) 資産接近方式이란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뿐 아니라 선물, 옵션 등의 파생금융상품과 외환의 거래, 지적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의 취득을 투자행위로 간주한다는 의미임.

보험회사설립권, 상품인허가권, 자산운용 및 보험계약체결후의 청구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높은 水準의(state-of-the-art) 投資自由化

MAI는 체약국의 투자가 및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구속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설립후 단계 뿐만 아니라 投資實行段階의 自由化의 보장도 요구하고 있어 투자후단계의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양자간투자협정보다 보호범위가 넓다. 즉, OECD 규약 등은 규약위반시 처벌이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반해 MAI는 강력하고 치밀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협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행정지도나 시장관행에 의한 유·무형의 차별에 대한 철폐도 요구하고 있어 기존 OECD 투자규범인 자본이동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상의 내국민대우 규정보다 투자자유화 및 보호수준이 높다[10].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산의 국유화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報償義務도 부과하고 있다.

3) 透明性 提高

체약국들은 협정에 영향을 미칠 법률, 제도, 절차, 행정결정과 사법판결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

10) 投資過程(Investment Process) 측면에서 볼 때, MAI는 투자실행단계를 규율하는 OECD의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진출이후단계(Post-establishment)를 규율하는 OECD의 내국민대우 규정을 단일화한 협정(single investment treaty)으로 규정할 수 있음.

4) 履行要件 賦課 禁止

MAI는 외국인투자가와 국내투자가에게 동등한 경쟁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규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特殊義務條項을 포함시켜 외국인과 내국인간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경쟁제한적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유치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자국기업 및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물의 일정비율수출의무, 국산품 사용의무, 기술이전의무 혹은 내국인 고용의무 등의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5) 獨占의 規制

정부지정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인정된 독점 공급기관은 영업활동상 외국인 투자가에게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6) 强度높은 紛爭解決節次

MAI는 國家 對 國家間 紛爭解決節次 뿐만 아니라, 投資家 對 國家間 紛爭解決節次를 도입하고 있으며, 패소시 제도개선은 물론 외국투자가의 손실에 대한 금전적 배상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MAI의 분쟁해결절차는 WTO의 분쟁해결절차보다도 한층 강화된 내용이며, 회원국간 묵시적 압력에 의존하고 있는 OECD 규약의 구속력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7) 多者性의 指向

현재 협정의 제정을 위한 협상은 OECD 회원국간에만 이루어지고 있지

만, 일단 협정이 제정된 후에는 비회원국도 이 협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규범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MAI 협상은 현재 29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OECD 비회원국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獨立條約(free-standing treaty)을 지향하고 있다.

나. MAI의 構成

MAI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초안은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表 Ⅱ-1> 참조). Ⅰ장은 전문(Preamble)으로 협정의 목표와 의의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Ⅱ장은 협정의 적용범주에 관한 내용으로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와 투자가의 정의, 그리고 지리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Ⅲ장은 투자가 및 투자에 대한 대우규정으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투명성의 의무를 두고 있는 一般的 待遇規程과 투자관련핵심인력의 일시적 입국 및 체류, 이행의무, 민영화, 독점 및 국영기업, 투자인센티브 등과 관련된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特殊項目으로 구분된다.

Ⅳ장은 投資保護, Ⅴ장은 紛爭解決에 관한 내용이며 Ⅵ장에서는 예외와 세이프가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Ⅶ장은 금융서비스 부문에만 적용되는 특별규정으로서, 건전성 규제, 상호인증, 인가절차, 정보이전 및 자료처리, 자율규제기구 및 협회, 금융관련 분쟁해결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Ⅷ장은 조세관련 조치에 대한 특별규정, Ⅸ장은 국별 유보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Ⅹ장은 여타 협정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Ⅺ장은 협정의 이행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이며 Ⅻ장은 협정의 비준, 발효, 탈퇴, 비회원국의 참여 등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

다.

<表 Ⅱ-1> MAI(案)의 構成

Ⅰ. 전문	협정의 목표와 의의
Ⅱ. 적용범위	1. 투자와 투자자의 정의 2. 적용의 지정학적 범위 3. 해외지역에 대한 적용
Ⅲ.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대우	1. 내국민대우 2. 최혜국대우 3. 투명성 4. 특수의무조항 (1) 투자가 및 핵심인력의 임시입국 체류 및 취업 (2) 최고경영자 (3) 고용요건 (4) 이행요건 (5) 민영화 (6) 독점 및 민영기업 (7) 투자인센티브 (8) 기업관행 (9) 기술 R&D (10) 지적재산권 (11) 공공부채 (12) 기준약화금지
Ⅳ. 투자보호	1. 일반대우 2. 강제몰수 및 보상 3. 폭동 등으로부터의 보호 4. 해외이전 5. 손해배상 6. 기존투자 보호
Ⅴ. 분쟁해결	1. 국가간 분쟁해결 (1) 일반규정 (2) 협의, 화해 및 중재 (3) 조정 2. 투자가·국가간 분쟁해결

<表 Ⅱ-1> 계속

Ⅵ. 예외 및 일시적 긴급제한조치	1. 일반적 예외 2. 통화 및 환율정책과 관련된 거래 3. 일시적 긴급제한조치
Ⅶ. 금융서비스	1. 건전성 규제 2. 상호인증 3. 인가절차 4. 투명성 5. 정보이전 및 자료처리 6. 자율규제기구 및 협회에의 가입 7. 지급결제제도 및 최종대부자 기능 8. 금융관련 분쟁해결 9. 금융서비스의 정의
Ⅷ. 조세관련조치에 대한 특별규정	
Ⅸ. 국별유보	
Ⅹ. 다른 국제규약과의 관계	
Ⅺ. 실행과 운영	1. 준비국 2. 협정사무국
Ⅻ. 종결조항	1. 서명 2. 비준 및 효력발생 3. 가입 및 탈퇴 4. 적용배제 5. 혜택거부 등

다. MAI의 主要內容

1) 投資 및 投資家의 定義

MAI에서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의 정의는 통상적인 직접투자의 개념에서 한층 더 진전된 것으로 대체로 기업개념에 기초한 협의의 투자 정의를 채택하고 있는 기존규범들과 달리, 특히 投資自由化의 측면에서

기존의 규범보다 그 적용범위를 크게 확장하고 있다. 이른바 단일의, 광범위한, 자산에 기초한(single, broad, asset-based) 정의를 채택하여 투자가가 직·간접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물론이고 주식 등 지분에 대한 권리, 채권·사채 등 기업의 부채, 각종 계약상의 권리, 대금 및 이행청구권, 지적재산권,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 등의 권리, 그리고 기타 동산 및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한다.

MAI에서 投資家란 締約國의 국적을 소유한 자연인(영주권자 포함), 그리고 타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모든 형태의 회사로 정의된다. 단, 지점의 경우 독자적인 투자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투자가의 정의에서 제외되고 있다.

2) MAI 상의 義務

MAI는 투자가 및 투자에 대해 투자유치국 정부가 취해야 하는 각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크게 핵심적인 의무, 인력 및 자본이동 관련 의무, 그리고 기타 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核心義務

① 內國民待遇

MAI 하에서 각 체약국은 內國民待遇의 原則에 따라 투자의 설립, 취득, 확대, 운영,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매매 및 기타청산 등에 있어 타체약국 투자가 및 투자에 대해 자국의 투자가 및 투자에 대해 부여하는 대우보다 결코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MAI하에서 외국인투자가가 직·간접적으로 국내에서 자산을 설립·취득하고, 설립·취득

한 자산의 사후 운용과 관련된 각종 활동을 함에 있어 국내투자가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MAI의 내국민대우는 자산의 설립, 취득과 같은 투자의 설립전 단계(pre-establishment stage), 그리고 설립·취득한 자산의 사용, 관리, 매매, 청산 등과 같은 투자의 설립후 단계(post-establishment stage)에 공히 적용되며 法的(de jure) 差別措置는 물론, 事實的(de facto) 差別措置 역시 금지하고 있다. 사실적 차별조치란 경제적 수요심사(ENT)제도와 같이 명시적으로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국내투자가에 비해 외국인투자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실적 차별조치의 금지는 국내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국민대우의 일반적인 성격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다 유리한 대우는 허용되므로 역차별적인 성격을 지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허용된다.

② 最惠國待遇

無差別原則으로서 특정 회원국에 허용되는 혜택을 다른 회원국의 투자가에게도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다. 내국민대우와의 차이는 단지 비교의 대상이 국내투자가 및 투자가 아니라 제3국(비체약국 포함)의 투자가 및 투자라는 데에 있다.

③ 透明性

일종의 공시의무인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각 체약국은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법률, 규정, 절차, 행정조치, 판례 등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타

체약국의 요청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는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모든 투자가들이 공유함으로써 투자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義務條項이라 할 수 있다.

나) 人力 및 資本移動에 관련된 義務

외국에서 자산의 설립, 취득, 그리고 이의 사후 운용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人力과 資本의 移動이 수반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은 핵심적 의무 규정을 보완하는 중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① 投資關聯 核心人力의 一時的 入國 및 滯留

MAI는 자국의 국내법규에 따라 투자관련 핵심인력의 일시적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투자관련 핵심인력은 투자가와 투자기업의 임원, 관리자, 전문가를 의미한다. 또한 체약국은 핵심인력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도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해야 하며, 특히 배우자의 취업허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체약국은 투자기업의 관리자에 대해 國籍要件을 부여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투자가 및 투자기업의 고용의 자유가 보장된다.

② 送金

이 규정은 投資保護에 관한 규정으로 분류되나, MAI가 투자의 설립전 단계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행위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자본이동을 규율하는 규정이라 볼 수 있다.

MAI 하에서 각 체약국은 타체약국 투자가의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급이 자국의 영역내외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지급에는 투자의 최초 자본, 투자의 유지·확대를 위한 추가

적 자본, 수익, 투자의 매각·청산대금, 투자관련 해외 고용인력의 임금, 보상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송금은 송금당일의 시장환율로 兌換可能한 貨幣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其他義務

① 履行義務의 禁止

MAI의 체약국은 외국인투자가(타체약국 및 비체약국 투자가)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출의무, 일정비율의 국내부품조달의무, 국내 상품의 우선적 구매 의무, 수입액이나 국내판매 등을 수출액에 연계시키는 의무, 기술이전의무, 합작법인 설립의무, 자국내 본점 설립의무, 자국내 일정비율의 고용·생산·연구개발·판매의무, 국내지분의무 등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비록 내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의사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非差別的 障壁(non-discriminatory barriers)'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행의무금지조항에 위반된다.

MAI에서 이행의무의 금지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투자에 공히 적용된다. 이 조항은 협정국이 외국인의 투자유인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② 投資保護關聯 其他義務

각 체약국은 타체약국 투자가의 투자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하고 항시적인 보호, 안전을 부여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國際法이 요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투자보호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으로는 수용 및 보상, 분쟁으로부터의 보호, 송금, 대위변제, 기존 투자의 보호의 5개 규정을 두고 있다. 收用 및 報償規程의 경우 수용이나 이와 유사한 조치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하고 적정하며 효과적인 보상의 지급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紛爭으로부터의 保護規程은 투자가가 투자유치국의 전쟁, 국가 긴급사태 등과 같은 상황에서 입은 투자의 손실에 대한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칙적으로 투자유치국이 보상을 하는 경우 내국민·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적용하여 투자유치국 정부가 비차별적으로 보상해야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代位辨濟란 투자가의 본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 투자가가 투자유치국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한 경우, 본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은 투자가가 투자유치국 정부에 대해 갖는 각종 청구권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규정이다.

旣存投資의 保護란 협정의 발효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서도 본 협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送金規程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투자와 관련한 모든 자본이동은 지체없이 당일의 시장환율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제수지가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와 급격한 단기자본이동으로 인해 투자유치국 금융시장이 교란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이 논의 중에 있다.

그 외에도 企業慣行에 관하여 MAI에서는 회원국 정부가 기업의 정관에 외국인 투자가를 차별하는 내용, 예를 들어 임원에 대한 국적제한, 외국인의 의결권행사에 차별을 두는 주식의 발행,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 등을 규정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③ 勞動·環境關聯 義務

MAI는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국내의 노동 및 환경기준을 약화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구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④ 其他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民營化過程에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은 투자의 정의와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규정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MAI는 민영화와 관련된 정보의 접근이 국내투자가와 외국인투자가에게 동등하게 허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영화에 관한 별도의 透明性條項을 두어 체약국 또는 그 지정기관이 민영화와 관련된 정보 및 절차를 신속히 공표하거나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하게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라) 例外

모든 규범에는 예외가 있게 마련이며, MAI 역시 상당한 例外規程을 두고 있다. 비록 MAI가 예외의 범위를 최대한 축소한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협정의 광범위한 적용범위, 강력한 구속성,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예외를 두는 것이 협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MAI의 주요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一般的 例外

國家安保, 國際平和 및 安全維持를 목적으로 한 조치는 MAI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투자보호규정 중 수용 및 보상, 분쟁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은 이러한 예외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公共秩序를 목적으로 한 조치에 대해 일반적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는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이를 일반적 예외의 사유로 인정은 하되, 엄격한 적용, 예컨대 매우 제한적인 공공질서에 대한 정의, 남용방지규정의 적용, 분쟁해결대상에의 포함 등을 통해 이의 남발을 최대한 막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② 一時的 세이프가드

이는 체약국이 심각한 국제수지문제, 급격한 자본이동과 같이 巨視經濟의 運用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경우 MAI 협정문에 어긋나는 조치를 일시적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이러한 조치는 상황의 종료시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비교적 엄격하고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IMF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국제수지상의 심각한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동시에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자금차입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아니면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③ 金融서비스 關聯 例外

㉮ 健全性規制(Prudential Regulation)

금융당국이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 예금자나 투자가, 보험가입자 등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監督的 規制措置는 MAI의 여타 규정, 예를 들어 내국민대우원칙이나 최혜국대우원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MAI 협정상의 의무이행

을 회피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남용방지규정도 동시에 두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 조치가 MAI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通貨·換率政策의 例外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 통화·환율정책을 목적으로 취하는 조치는 정부의 고유권한 행사로 역시 협정적용의 예외로 인정(carve-out)된다. 그러나 이는 통화당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가 아니라 당국이 市場參與者의 일원으로서 시장에서 행하는 공개시장조작이나 외환시장개입등의 거래행위에 한정된다.

㉰ 相互認定

불필요한 규제와 감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의 차원에서 타국이 취한 조치를 상호인정하는 절차나 협약은 최혜국대우의 위배이나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相互認定協定이 제3국에 대해 배타적인 협정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협상참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④ 租稅措置의 例外

이중과세방지 협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조세조치는 MAI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수용적 성격의 조세조치는 수용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라) 紛爭解決

MAI는 설립후 및 설립전 단계 모두에 적용되는 구속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두고 있으며 특기할 만한 점은 국가 대 국가뿐만 아니라 투자가 대 국가간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가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① 國家 對 國家間의 紛爭解決

국가 대 국가간의 분쟁해결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며 이러한 분쟁은 사전협의, 조정, 화해, 중재의 단계적 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먼저 분쟁국들은 본격적인 중재에 앞서 냉각기를 갖는다. 즉, 양국은 60일 이내의 協議를 우선적으로 가지며, 양자 협의 실패시에는 양국의 합의하에 체약국 그룹에서의 다자간협의를 재차 요청할 수 있다.

仲裁는 어느 한나라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시작될 수 있으며, 중재재판은 분쟁당사국들에 의해 선정된 3인에서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중재재판에서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강제성을 가진다. 그리고 중재재판의 최종결정에 포함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는 체약국의 조치가 MAI 의무에 위반된다는 선언, 체약국의 조치를 MAI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는 시정권고, 금전적 배상, 원상회복을 포함한 구제수단 등이 규정되고 있다.

중재결정의 불이행에 따른 勝訴國의 報復措置에 관해서는 국제법상 인정되는 모든 보복조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패소국의 MAI상의 권리제한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간에 완전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② 投資家 對 國家

투자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절차는 국가의 협정위반으로 인해 투자가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미 발생한 손실 뿐만 아니라 곧 발생할 손실, 즉 投資後損失 뿐 아니라 投資前損失에도 적용된다. 또한 손실이나 피해가 중재제기시까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체약국의 위반행위와 손실간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한 투자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계획한 투자이익의 상실도 포함된다.

또한 MAI는 投資家의 提訴範圍를 비단 MAI 상의 의무위반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투자가가 체약국과 맺은 여타 계약, 협정 등에 의한 체약국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도 투자가가 MAI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가와 국가간의 분쟁 역시 협의에 의한 타결을 우선하여, 당사자간의 협상과 협의를 거쳐 분쟁을 해결하게 하고, 실패할 경우 仲裁節次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투자유치국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투자가가 선택할 수 있는 중재절차에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적 절차, 사전에 합의된 해결절차,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중재소(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ICSID)의 해결절차,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의 중재절차,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의 중재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중재재판의 결과는 최종적이고 구속적이며, 구제수단에는 체약국의 조치가 MAI 의무에 위반된다는 선언, 금전적 보상, 원상회복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패소국이 최종판결을 불이행하는 경우 투자가의 본국이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할 수 있다.

마) 自由化의 義務 및 方式

① 國別留保의 設定

각국은 자국의 MAI에의 非附合措置를 대상으로 유보를 설정하며, 설정된 유보에 대해서는 MAI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국은 유보를 설정함에 있어 개개의 유보사항에 대해 소속 부문, 유보의 내용, 유보의 사유, 관련법규 등을 명시하게 되어있다.

MAI의 의무 중 국별 유보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투자의 정의, 분쟁해결절차의 핵심적 요소 등과 같은 체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보를 허용하지 않으며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신규의무 등과 같은 실질적인 의무에 대해서만 유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가고 있다.

각국은 현존하는 비부합조치에 한해서만 유보를 설정할 수 있으며 향후 비부합조치의 도입을 예상하여 미리 제출하는 豫備的 留保는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② 現狀凍結

각국이 일단 설정한 유보에는 MAI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규정의 하나인 現狀凍結(standstill)의 의무가 적용된다. 즉 추후에 새로운 비부합조치를 유보로서 도입할 수 없으며, 기존의 비부합 정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유보사항을 변경하는 것도 금지된다.

現狀凍結은 MAI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규정의 하나이나, 일부 조치의 경우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즉, 민영화(1차 매각)에 관한 조치, 독점해제시의 조치, 신규업종도입시의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유보설정의 허용 문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③ 自由化

각국이 설정한 유보에 대해서는 漸進的 撤廢의 원칙이 적용된다. 점진적 철폐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협정 발효 이전의 초기 점진적 철폐와 발효 이후의 점진적 철폐의 단계적인 자유화를 추진하며, 점진적 철폐의 방식에 있어서는 각국의 유보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한 서로간의 압력 행사, 유보축소를 목표로 한 라운드 방식의 협상 등이 고려되고 있다.

바) 非會員國의 參與

MAI는 비회원국의 참여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MAI는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조약이므로 비회원국이라도 협정의 의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 동협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MAI에의 가입의사를 가진 비회원국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가입조건에 대한 협상, 특히 國別留保協商이 진행될 예정이다.

3. 協商爭點

MAI의 협정문안은 대부분 완성단계에 있으나 아직 협상중인 현안들이 있다. MAI의 타결여부는 이러한 사항들에 관한 논의의 진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먼저 투자의 정의에 金融投資를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며 투자유인의 문제도 MAI 타결이후 추후 협상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投資規範適用의 例外에 있어서도 국제수지상의 문제로 인한 일시적 위반의 허용여부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세와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각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밖에도 노동 및 환경기준, 문화산업의 포함여부, 타국기업에 대한 법적용 문제, 유럽연합 등 경제통합체에 대한 투자규범의 적용문제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중 勞動 및 環境基準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동 및 환경기준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29개 OECD회원국들은 원칙적으로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국가별적용유보 문제 등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한국을 포함한 신흥공업국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文化産業에 대해서는 미국이 반드시 협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측은 영화 등의 분야에서의 미국의 막강한 경쟁력을 우려하여 이의 제외를 완강히 고집하고 있다. 타국기업에 대한 법적용문제도 협상타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의 쿠바에 대한 무역제재법안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미국측은 쿠바와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국기업이건 외국기업이건 제재를 가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데 비해 프랑스 등 많은 국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 등 經濟統合體에 대한 투자규범의 적용문제의 경우 EU국가들은 역내투자자유화의 이익을 역내 국가에 한정할 수 있도록 MAI의 적용예외를 주장하는 반면 EU국가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한가지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로는 각국의 投資自由化留保目錄協商이 있다. 유보목록에 대한 협상은 협정문에 대한 협상과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각국의 유보사항의 개수와 범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국간 양보사항의 불균형으로 인해 협상을 진행할 여지가 적어 타결에 애로를 겪고 있다.

<表 Ⅱ-2> MAI의 主要內容

부 문	내 용	
협상지침	투자보호, 투자자유화, 분쟁해결	
투자자 및 투자의 정의 및 적용범위	투자자	자연인, 법인, 법에서 정한 단체
	투자	기업, 주식 등 지분에 대한 권리, 채권·사채·융자 등 기업의 부채, 각종 계약상의 권리, 대금 및 이행 청구권, 지적재산권, 면허·인가·허가, 기타 동산·부동산, 임대·저당유치에 의한 권리, [순수금융투자, 정부채권]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명성
	특별항목	핵심인력, 이행의무조건, 민영화, 독점 및 공기업, [투자유인], 기업관행
투자보호	원칙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완전하고 항시적인 보호와 안전제공
	각항	수용, 분쟁으로부터 보호, 송금, 대위에 관한 조항
분쟁해결절차	국가:국가	협의, 조정, 화해, 중재(중재위원회)
	투자자:국가	협상, 협의, 중재(법원, 행정위원회, 합의된 절차,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 UN의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절차,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절차)
예외규정	일반적예외	국가안보, 국제평화와 안보유지, 공공질서유지
	일시적위반	[국제수지]
	국별유보	[각국목록]
기타 문제	[조세], [금융서비스], [환경], 의무조건의 상충, 다국적기업에 관한 지침	
비회원국 가입	개방, 원하고 능력있는 경우	
협상쟁점사항	[지방정부, 문화, 노동, 국외법적용, 경제통합체문제]	

註 : [ ]는 아직 협상중.

資料 : 황진우, 「OECD다자간투자협정(MAI)과 우리의 대응」, 『한화경제』 1997.5.

Ⅲ. 國內保險産業의 MAI 關聯事項

1. 市場接近(Market Access)上의 障碍要因

1997년 이전까지 보험회사의 新規設立은「전국규모의 순수내국 생명보험회사의 허가기준」과「지방생명보험회사 설치허가기준」에 의하여,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진출은「외국생명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허가기준」과「외국손해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립허가 기준」및「합작생명보험회사의 설립허가기준」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그러나 보험회사 신규설립의 適正性與否를 결정하는 ENT 조항이 너무 자의적이고 투명성이 없다는 국내외의 지적에 따라 정부당국은 1997년부터 ENT 조항을 폐지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保險會社設立許可基準」을 1997년 4월 19일자로 확정 고시하였다. 동 기준에는 주주(내국인 주주 및 외국인 주주)의 자격, 최소납입자본금 또는 최소영업기금에 대한 요건 및 허가신청서류의 제출, 허가심사기준, 허가절차, 허가심사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다[11].

이러한「保險會社設立許可基準」의 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설립요건 및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진출요건이 완화되고 허가심사기준의 客觀性과 透明性이 제고됨으로써 외국보험회사도 주주[12] 및 최저자본금조건을 충족하는 한 내국민대우를 보장받게 되었으므로 시장진입과 관련한 法的

---

11)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보험회사설립허가기준은 <附錄 2> 참조.

12) 본국에서 保險事業許可를 취득하고 保險事業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단, 외국인주주가 지주회사일 경우에는 당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대한민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인주주에 대한 심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함.

內國民待遇(de jure National Treatment)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상의 경쟁제한요소와 같은 事實的 內國民待遇(de facto National Treatment) 여부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시장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음의 <表 Ⅲ-1>은 MAI 내용 중 국내보험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表 Ⅲ-1> MAI關聯 國內保險制度

MAI의 내용	보험관련제도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 경제적수요심사제도(1997.1 폐지) · 국내지점대표자의 상주의무 · 손해보험 공동인수협정 · 모집관련 상호협정 · 상품개발규제
건전성규제	·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규제 ·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 · 요율규제 · 지급여력 · 책임준비금 · 보험보증기금
핵심인력이동	·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출입국관리법)
독점 및 국영 기업에 관한 사항	· 공영보험
송금	· 국내지점의 이익잉여금송금시 감독원장 신고 · 이월결손금에 대한 보전의무

현재 법상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들 수 있는 것은 이월결손금에 대한 보전의무[13], 국내지점대표자의 상주의무[14] 및 이익잉여금

13) 外國保險會社 國內支店은 본국에 있는 본점과는 독립된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결과 결손으로 인하여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내에 본점에서 송금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전하여야 함.

14)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대한민국안에서 상근하여야 함.

의 송금시 신고의무[15], 국내재산 보유의무(손해보험)[16]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인 차별대우 이외에도, MAI에서는 특정 법규나 조치로 인해 외국보험회사들이 자국시장이나 제3국시장에 비해 보다 심한 제약을 받는 경우나 내국보험회사를 외부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는 없으나 법규나 조치에서 파생되는 효과 때문에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기진입한 외국업체의 경쟁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사실상의 내국민대우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17].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실상의 내국민대우와 관련한 경쟁제한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營業活動上의 障碍要因

가. 판매채널의 制限

生命保險會社의 1997회계년도 판매채널별 市場占有率(<表 Ⅲ-2>참조)을 초회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집인에 의한 판매가 전체의 6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을 구분할 경우, 개인보험

15)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이익잉여금을 본점 등으로 送金하고자 하는 때에는 송금일을 정하여 10일전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6) 외국보험사업자는 대한민국안에서 부담한 債務(그 본사에 대한 부채와 이연부채를 제외한다)와 營業基金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재산(이연자산을 제외한다)을 대한민국안에서 보유하여야 함.

17) MAI에서는 완전한 투자자유화의 예외로서 법적·사실적 내국민대우 위배조치에 대하여 유보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留保事項에 대해서는 협정체결 이후에도 추가적인 협상 및 심사 등을 통한 자유화협상이 계속될 전망임. 특히 사실적 내국민대우 위배사항의 경우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엄격한 유보설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강력한 분쟁해결절차가 뒷받침되고 있는 MAI하에서 사실적 차별조치를 유지·도입하는 데에는 상당한 저항이 예상됨.

은 모집인의 비중이 91.7%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表 Ⅲ-2> 生命保險 판매채널별 初回保險料 比重 推移

(단위 : %)

구 분 \ 기 간		FY '93	FY '94	FY '95	FY '96	FY '97
전 체	회사직급	20.6	21.1	24.2	39.2	35.5
	모 집 인	78.1	78.0	74.8	60.0	63.1
	대 리 점	1.2	0.8	0.9	0.8	1.3
	기 타	0.1	0.0	0.1	0.0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Factbook』, 각년도 및 보험개발원, 『보험동향』, 각호.

이러한 모집인의 높은 판매비중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신규로 진입한 보험사의 경우 모집인을 자체적으로 육성하는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타사 모집인의 스카웃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집인판매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나친 모집인 스카웃경쟁에 따르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및「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의 경우 본래목적과는 달리 국내에 신규진입하려는 외국사의 경우 모집채널상의 제한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즉, 협정내용중 타사의 모집인이었던 자를 등록말소후 일정기간이내에 자사의 모집인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스카웃방지규정이 보험회사를 신설할 경우 실질적인 경쟁제한조치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의 대체할 수 있는 판매채널로서 독립대리점이나 보험중개인 또는 근래들어 유럽을 중심으로 한 보험선진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TM이나 인터넷판매 등은 아직 도입역사가 일천할 뿐만아니라 관련제도의 미비와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판매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며, 보험상품의 은행창구판매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18](<表 Ⅲ-3>

참조). 따라서 상대적으로 모집인채널을 구축하기는 어려운 반면 타판매채널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시장에 진출하는 회사의 경우 판매채널전략 수립에 제한을 받게 된다.

<表 Ⅲ-3> 유럽國家 個人生命保險 판매채널별 市場占有率

(단위 : %)

판매채널 / 국가	보험 중개인	전속 대리점	은행, 건설조합	직접판매 회사	회사직급	전화판매
벨기에	57	9	19	13	2	0
프랑스	7	13	55	18	2	5
독일	30	61	7	1	1	0
이탈리아	11	43	20	19	7	0
네덜란드	45	7	18	13	1	16
스페인	12	48	23	7	9	1
스웨덴	26	2	22	38	2	10
스위스	9	2	1	87	0	1
영국	45	7	13	33	0	2

資料 : Nuttney, Andrew, *The Marketing and Distribution of European Insurance*, Datamonitor, 1995

이러한 판매채널의 제한성은 국내 보험산업, 특히 생명보험산업의 寡占的 産業構造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생명보험의 경우 <表 Ⅲ-4>에서 보듯이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가 1987년 이후 신설사의 등장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 1995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1997년 현재 33개 보험회사중 3개의 대형보험회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전체 수입보험료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부실금융기관들의 시장에서의 퇴출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금융기관 선택시 안정성이 중

18) 우리나라는 보험업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불공정한 보험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은행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대형3사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높은 시장집중도는 일부 대형사들이 보험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규진출한 외국보험사들의 시장침투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表 Ⅲ-4> 生命保險市場의 市場集中度 推移

(단위 :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수입보험료									
상위3개사	71.9	65.5	66.6	64.5	60.3	59.7	61.3	63.9	67.2
기존6개사	94.2	87.2	85.6	81.8	76.8	73.7	73.1	74.8	75.8
허핀달지수	0.2029	0.1739	0.1746	0.1658	0.1444	0.1409	0.1460	0.1547	0.1729

資料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도.

損害保險의 경우에도 1997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대리점에 의한 판매가 전체의 41.1%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모집인에 의한 판매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등 가계성보험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전체의 43.9%를 차지함으로써 판매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국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가계성보험을 중심으로 모집인의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계보험시장에서의 외국사의 영업력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表 Ⅲ-5> 損害保險 판매채널별 收入保險料 比重 推移

(단위 : %)

	FY '93	FY '94	FY '95	FY '96	FY '97
회사직급	13.1	14.2	12.8	10.6	13.2
모 집 인	27.4	30.4	33.7	41.0	43.9
대 리 점	51.9	44.4	41.9	41.8	41.1
공동인수	7.69	11.0	11.6	6.3	1.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 보험감독원, 『연차보고서』, 및 보험개발원, 『보험동향』, 각호.

나. 獨占的 保險서비스 供給機關의 存在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國民年金, 醫療保險, 産災保險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遞信保險의 경우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신력과 저렴한 사업비 및 전국적인 점포망을 토대로 민영보험회사와 경쟁하고 있다. 또한 이들 보험은 민영보험의 감독기관인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소관부처의 감독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보험의 대부분은 민영보험과는 달리 강제가입 또는 국고보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공영보험은 대부분 사회보장의 일환으로서 보험서비스를 시장경쟁에 맡겨두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나, 일부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과 같이[19]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독점적, 배타적인 보험서비스 공급기관의 존재는 그 자체가 장벽은 아니지만 민영보험회사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진입과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간접적인 장애요인으로 볼 수 있다.

<表 Ⅲ-6> 公營保險 運營現況(1996年度)

(단위 : 백만원)

보 험 명	관 련 법 령	보유계약건수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국 민 연 금	국민연금법	7,425,700(명)	4,943,556	1,117,644
공 무 원 연 금	공무원연금법	971,303(명)	2,475,936	2,420,561

19) 예컨대, 산재보험의 경우 덴마크, 싱가폴, 핀란드, 포르투칼에서는 민영보험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벨기에, 스위스에서는 공공기관과 민영보험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민영보험회사의 참여가 활발하며,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일정소득 이상자에게는 민영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表 Ⅲ-6> 계속

보 험 명	관 련 법 령	보유계약건수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립학교직원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법	교직원:191,949(명) 학교:2,668(기관)	409,795	344,435
의 료 보 험	의료보험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 의료보험법	46,344(천명)	6,210,536	5,042,467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56,894(명)	1,675,402	1,355,337
수 출 보 험	수출보험법	155,595(건)	51,510	72,129
체 신 보 험	체신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	1,662,804(건)	2,522,621	1,909,654
고 용 보 험	고용보험법	338,218(명)	777,650	30,526

註 : 고용보험은 1997년 3월말 기준.
資料 : 보험감독원,『보험통계연감』및 노동부,『고용보험통계월보』

다. 資金調達方法의 規制

그동안 保險會社의 資産運用規制는 보험사의 자율과 경쟁촉진 및 외국과의 정합성제고 측면에서 수차례 완화되어 왔으나, 보험사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규제는 주요 보험선진국이나 타금융권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험료수입과 증자를 제외한 보험사의 자금조달방법은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환매조건부채권(RP)의 매도, 콜머니중개기관을 통한 콜머니,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그리고 지급여력 확충을 위한 후순위차입으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보험사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은행차입이나 CP 및 사채발행을 규제하는 것은 타금융권과의 형평성이나 국제적인 정합성의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Ⅲ-7> 主要國의 資金調達規制 現況

대상 / 국가	규제여부	자금조달방법
미 국	- 법적규제없음	- 일반자금조달 수단 ○ 단기:CP발행,단기차입,양도성대부(Asset Trading) ○ 장기:사채,부동산저당부사채,유로채
일 본	- 보험감독법상 제한없음 - 행정지도에 의한 제한	- 당좌차월, Impact Loan, CP발행, RP매매, 후순위채발행
영 국	- 법적규제없음	- 일반자금조달 수단:은행차입, 채권발행, 유로채
독 일	- 법적규제없음 - 행정지도를 통해 단기자금 차입인정	- 단기자금: 당좌차월, 은행차입, 콜머니조달, RP매도
프랑스	- 법적규제없음	- 주식회사:Impact Loan, 은행차입, CP발행, 사채발행 - 상호회사:차입제한
한 국	- 법적규제	- 당좌차월, RP매도, 콜머니,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후순위차입

註 : Impact Loan이란 국내 외국환은행이 해외의 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여 이를 국내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자금용도의 제한없이 대출하는 거주자외화계정임.

資料 : 보험개발원,『주요국의 보험자산운용 규제 및 현황』, 1996.1.에서 재작성.

이러한 자금조달상의 규제 뿐만아니라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투자비율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투자비율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채권이나 대출 등에 대하여도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투자제한조항을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제는 국내사에게도 적용되므로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은 아니나, 외국보험회사들에게는 자국이나 제3국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資金調達이나 資産運用상의 自律性을 제약하므로 무차별적인 규제(non-discriminatory regulation)로서 차별적인 규제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

라. 商品開發의 制限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상품인가체계는 상품의 판매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전신고상품”과 판매후 15일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인가에 갈음하는 “사후보고상품”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아래 <表 Ⅲ-8>에서 알 수 있듯이 신고상품의 비중은 저조한 상황이며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신상품의 대부분은 상품개발기준에 준하여 개발된 보고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表 Ⅲ-8> 新商品 認可實績 推移

구분 \ 연도		FY'93	FY'94	FY'95	FY'96	CY'97
생명보험	신고상품	16(17.2)	11(7.6)	11(7.3)	10(6.0)	24(8.3)
	보고상품	77(82.8)	134(92.4)	140(92.7)	156(94.0)	266(91.7)
	소계	93(100.0)	145(100.0)	151(100.0)	166(100.0)	290(100.0)
손해보험	신고상품	17(47.2)	14(48.3)	17(30.4)	15(20.5)	16(18.6)
	보고상품	19(52.8)	15(51.7)	39(69.6)	58(79.5)	70(81.4)
	소계	36(100.0)	29(100.0)	56(100.0)	73(100.0)	86(100.0)

資料 : 보험감독원

또한 신고상품의 경우에도 慣行上 타금융권과의 경쟁상품이나 제3분야보험 또는 선진국형 신상품 등 시장성이 있고 획기적인 상품은 타사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주로 業界 共同商品의 형태로 개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회사간 상품의 差別性이 제한적이다. 한편 공동상품 개발과정에서도 외국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사의 인수정책에 부합되지 않아 판매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보의 경우 ’96회계년도에 판매된 510종(특약제외) 중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10개 상품 중 8개가 공동상품으로서 이들 상품이 전체수입보험료의 66%를 차지하였으며, 장기손해보험의 경우에도 ’97회계년도 전체 원수보험료의 57.9%를 공동상품이 차지하는 등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품개발상의 제한이 그 자체로는 외국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충분한 영업망을 지닌 국내사에 비해 영업력이 뒤지는 외국사들의 입장에서는 상품이나 가격에서 차별성을 지니지 못함으로써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 損害保險 共同引受協定

손해보험의 경우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협정, 원자력보험 공동인수협정,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의 4개의 공동인수협정이 운영되고 있으며(<表 III-9> 참조)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협정을 제외하고는 국내 손해보험회사만이 이들 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共同引受協定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사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외국사가 공동인수협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이 신규회원 가입에 동의(다수결 또는 만장일치에 의한 의결)하고 협정을 변경한 후 변경된 상호협정에 대하여 감독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내사들의 협조없이는 공동인수협정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表 Ⅲ-9> 損害保險 共同引受協定 現況

협정 / 구분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 인수협정	원자력보험 공동인수협정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
운영기관	한국화재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대한재보험	11개손보사 중 1개 간사사
보험종목	화재보험, 조립보험, 기관기계보험, 건설공사보험, 동산종합보험, 운송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선박건조보험, 항공보험,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원자력관련보험	자동차보험
대상물건	- 방위산업과 관련된 보험계약 - 국유건물과 관련된 보험계약	- 500톤미만 무선급소형선박의 선박보험 - 방위산업관련 해상적하보험,선박건조보험 및 항공보험계약 - 관세법 제65조에 규정한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중 영업용보세장치장, 영업용보세창고,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및 동법 제67조의 허가를 받은 타소장치장 관계 보세화물의 화재보험 및 동산종합보험계약	원자력관련물건	회원사가 인수거부한 자동차보험계약
참여회사	11개 국내손보사	11개 국내손보사	11개 국내손보사, 대한재보사	11개 국내손보사, A.H.A

Ⅳ. 進入規制와 外國社 市場占有率과의 關係

1. OECD 會員國別 外國社[20] 市場占有率

OECD회원국의 국내시장에서 외국계보험회사(foreign controlled companies) 및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대리점(branches & agencies of foreign companies)이 차지하는 市場占有率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 캐나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비교적 높은 반면 일본, 스위스 등은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1995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외국사가 생명보험의 경우 6.07%, 손해보험의 경우 0.42%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OECD 회원국 중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表 Ⅳ-1> OECD國家別 外國社 市場占有率 推移

(단위 : %)

연도 / 국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호 주	18.86	43.81	22.27	40.70	26.17	58.08	-	38.91	-	37.05	-	38.13
오스트리아	34.01	47.44	36.08	46.89	36.49	48.18	33.82	48.78	37.51	49.25	34.74	47.60
벨 기 에	7.64	11.11	7.32	10.07	7.09	7.25	8.40	6.84	8.19	2.92	-	-
캐 나 다	35.29	63.32	34.09	62.33	35.81	64.37	28.72	61.58	33.17	70.50	38.19	72.06
덴 마 크	9.06	27.18	9.33	27.06	9.55	34.48	7.65	36.74	8.67	22.15	7.54	32.84
핀 란 드	0.00	0.23	0.00	0.22	0.00	0.23	-	-	0.00	-	-	-
프 랑 스	8.15	12.12	-	-	6.66	18.29	-	-	-	-	-	-

20) 외국사에는 外國系保險會社, 외국사의 지점 및 대리점 포함. 외국계보험회사의 정의는 회원국별로 차이가 있으나,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사의 지분이 50%이상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비율이 49%이상인 합작사와 외국사의 현지법인(자회사)을 외국계보험회사로 간주하였음.

<表 Ⅳ-1> 계속

국가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독 일	12.54	17.66	12.47	13.95	11.43	14.26	11.33	16.29	9.80	7.83	9.14	7.30
그 리 스	-	-	-	-	-	-	33.00	27.96	-	-	-	-
아이슬랜드	0.00	0.00	0.72	3.35	1.64	3.92	3.38	4.11	4.09	0.68	4.76	3.63
이 태 리	-	-	-	-	-	-	-	-	1.80	2.80	-	-
일 본	2.24	2.86	2.35	3.15	2.48	3.17	2.66	3.16	3.07	3.29	3.40	3.33
멕 시 코	-	-	-	-	0.00	-	0.00	-	0.00	0.00	1.13	3.87
네덜란드	24.90	27.42	19.89	20.08	23.30	29.05	22.85	25.85	22.36	23.51	22.22	22.29
뉴질랜드	-	-	-	-	-	-	-	-	-	-	-	-
노르웨이	0.00	15.17	1.73	17.38	2.18	15.72	1.77	16.60	-	-	2.48	-
포르투갈	30.92	13.06	33.28	27.30	27.86	25.72	28.78	12.76	29.35	9.12	12.15	15.35
스 페 인	16.35	31.52	17.06	39.12	-	-	23.34	41.29	17.70	32.10	26.69	33.09
스 웨 덴	-	-	0.00	-	0.00	-	0.00	-	0.00	-	0.00	-
스 위 스	2.92	9.83	2.43	9.56	2.35	9.79	2.78	12.22	-	10.89	7.35	7.81
터 키	0.57	12.54	1.17	13.35	-	12.30	4.88	11.47	5.80	10.01	6.60	9.82
미 국	9.18	7.10	8.19	9.43	12.14	10.04	15.15	10.39	13.41	9.81	12.65	10.00
한 국	3.03	0.84	3.82	0.62	4.82	0.49	5.79	0.47	6.29	0.44	6.07	0.42

註 : 수입보험료기준. 단, 그리스는 보유보험료기준(net written premium basis).
資料 :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1988-1995, 1997 ed., OECD. 및 『보험통계연감』, 각년도, 보험감독원.

2. 進入規制와 外國社 市場占有率과의 關係[21)]

일반 제조업 상품과 달리 서비스 상품의 경우 상품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간에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보험의 경우에도 향후 정보통신기술이 더욱 발달하여 cross-border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까지는 현재와 같이 현지국에 營業據點의 設置를 통한 서비스 공급이 외국사업자들의 일반적인 서비스 공급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공급은 경상무역자유화규약중 D/6항목의 자유화여부에 의하

21) 조강필, 정영철, 1996.

여 그 규모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 극단적인 예로 외국사업자의 진입을 철저히 규제하는 국가의 경우 외국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영(0)이 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외국사업자들에 대한 進入規制가 외국계 보험회사, 외국사의 지점 및 대리점의 당해국 시장점유율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외국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內國市場保護라는 정책목표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외국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외국사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효과를 표본의 전기간(1990년 1994년)을 대상으로는 살펴볼 수 없었다. 현재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는 1995년 2월 현재 시점에서의 OECD 회원국들의 D/6 유보여부에 관한 자료뿐이다(「OECD 加入과 韓國經濟의 自由化」참조). 동 자료에 의하면 1995년 2월 현재 분석대상 24개 OECD 회원국 중 8개 회원국이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의 보험항목 중에서 외국사의 지점 및 대리점의 설치·운영조건과 관련하여 D/6을 유보하고 있다. 한편, D/6 유보국가들 중에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EU국가들의 경우 EU역내에 대하여는 동 항목을 자유화함으로써 역외국가들과의 차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외국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여부와 EU가입여부에 따라 다음의 <表 Ⅳ-2>와 같이 4개의 그룹으로 OECD 회원국들을 구분할 수 있다.

<表 Ⅳ-2> 外國事業者에 대한 進入規制 및 EU 加入與否에 따른 區分

구분 / 국가	규제 여부	EU가입 여부	그 룹
호 주	규제		Ⅲ
오 스 트 리 아		가입	Ⅱ

<表 Ⅳ-2> 계속

구분 / 국가	규제 여부	EU가입 여부	그 룹
벨 기 에		가입	Ⅱ
캐 나 다			Ⅳ
덴 마 크		가입	Ⅱ
핀 란 드	규제	가입	Ⅰ
프 랑 스	규제	가입	Ⅰ
독 일		가입	Ⅱ
그 리 스		가입	Ⅱ
아 이 슬 랜 드	규제		Ⅲ
아 일 랜 드	규제	가입	Ⅰ
이 태 리	규제	가입	Ⅰ
일 본			Ⅳ
룩 셈 브 르 크		가입	Ⅱ
멕 시 코	규제		Ⅲ
네 덜 란 드		가입	Ⅱ
뉴 질 랜 드	규제		Ⅲ
노 르 웨 이			Ⅳ
포 르 투 갈	규제	가입	Ⅰ
스 페 인		가입	Ⅱ
스 웨 덴		가입	Ⅱ
스 위 스			Ⅳ
터 키			Ⅳ
영 국		가입	Ⅱ
미 국			Ⅳ

따라서 D/6을 유보하는 경우 동항목의 유보국과 자유화국 사이에 또는 EU 가입여부에 따라 외국사의 비중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기의 <表 Ⅳ-2>를 이용하여 EU국가중 D/6 유보국을 그룹 Ⅰ, D/6 자유화국을 그룹 Ⅱ, 비EU국가 중 D/6 유보국을 그룹 Ⅲ, D/6 자유화국을 그룹 Ⅳ로 분류하였을 때 각 그룹별 외국사의 平均市場占有率은 다음의 <表 Ⅳ-3>과 같다.

<表 Ⅳ-3> 그룹별 外國社 平均市場占有率

(단위 : %)

구분	그룹Ⅰ	그룹Ⅱ	그룹Ⅲ	그룹Ⅳ
생보	11.67	19.21	2.05	13.86
손보	5.96	24.29	12.57	23.40

위의 <表 Ⅳ-3>을 통하여 살펴볼 때 D/6 자유화국들로 구성된 그룹 Ⅱ와 Ⅳ가 유보국들로 구성된 그룹 Ⅰ과 Ⅲ에 비하여 생·손보 모두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U(그룹Ⅰ과 Ⅱ)와 비EU(그룹 Ⅲ과 Ⅳ)으로 구분할 경우 생명보험은 EU가 평균적으로 더 높았으며, 손해보험은 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EU역외 OECD 회원국의 시장 평균을 적용할 때 생명보험의 경우 약 10%내외의 市場蠶食을 예상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20% 내외의 시장잠식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추정은 평균에 의한 단순비교이므로 규제환경의 차이와 EU 경제통합의 차이에 따른 4개 그룹들이 동일한 모집단 분포(population distribution)를 갖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기로 한다. 統計的 檢證方法으로는 Mann-Whitney test를 모집단이 두 개이상인 경우로 확장한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한다. 귀무가설 및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다.

H_0 : 4개그룹의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에는 차이가 없다.

H_1 : 적어도 하나이상이 나머지 그룹과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에 차이가 있다.

Kruskal-Wallis test는 표본관찰치(sample observation)의 순위(rank)에 의존하는데, 표본들이 서로 독립적임을 가정하고 있다. 모집단의 평균이 서로 동일하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F-test나 ANOVA 등과 같은 검정방법은 모

집단 분포가 정규분포를 가져야 하는 반면, 동 test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표본의 숫자가 작을수록 그 장점이 있다.

EU가입여부와 규제의 차이에 따라 생·손보로 구분된 네 개의 母集團順位表는 각각 다음의 <表 Ⅳ-4>, <表 Ⅳ-5>와 같다.

<表 Ⅳ-4> EU加入與否와 規制의 差異에 따른 母集團 順位表(生命保險)

그룹 I		그룹 II		그룹 III		그룹 IV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29.35	13	37.51	15	4.09	6	33.17	14
1.80	4	22.36	12	0.00	2	13.41	10
0.00	2	17.70	11			5.80	7
		9.80	9			3.07	5
		8.67	8				
		0.00	2				

<表 Ⅳ-5> EU加入與否와 規制의 差異에 따른 母集團順位表(損害保險)

그룹 I		그룹 II		그룹 III		그룹 IV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9.12	6	49.25	14	37.05	13	70.50	15
2.80	3	32.10	12	0.68	2	10.01	8
		23.51	11	0.00	1	9.81	7
		22.15	10			3.29	4
		10.89	9				
		7.83	5				

위의 표에 의하여 계산된 Kruskal-Wallis 통계치 H가 자유도 3인 $\chi^2_{0.05}$ = 7.8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歸無假說의 棄却與否가 결정된다. 계산결과 생·손보 각각의 H값은 다음과 같다.

생명보험 : H = 2.89 < $\chi^2_{0.05}$ = 7.81

손해보험 : H = 3.75 < $\chi^2_{0.05}$ = 7.81

따라서 생·손보 모두 4개의 표본관찰치 그룹의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에는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進入規制가 內國市場保護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장잠식의 주된 요인은 외국사가 내국사에 비하여 국내의 보험제도하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영업을 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시사해 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OECD회원국들에 비해 아직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외국사가 본격적으로 국내보험시장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외국사들이 외형보다는 이익중심의 특화된 營業戰略을 구사해온데 주된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내보험시장의 구조적 특성이나 제도상의 특징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과 같은 國家特有의 요인이 유무형으로 외국사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사가 내국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실상의 내국민대우를 의무화하고 있는 MAI가 타결될 경우 외국사의 입장에서는 大規模資本이나 先進技法 등 자신들의 경쟁우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근래 들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일련의 M&A 활성화조치[22]를 비롯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과감한 자유화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사들의 국내보험산업 진입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외국사의 시장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22) 대표적인 M&A 활성화조치로서 株式大量所有制限制度(증권거래법 제200조)가 '97년 4월부터 폐지되었으며, 이 때 도입된 强制公開買受制度(증권거래법 제21조 제2항)도 '98년 2월 24일부터 폐지되었음. 또한 '98년 5월 15일에는 외국인이 국내기업주식의 1/3 이상 취득시 해당기업의 이사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外國人投資 및 外資導入에 관한 法律改正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98년 5월 25일부터 상장주식과 코스탁등록주식에 대한 外國人의 株式取得限度制限이 전면 폐지되었음.

Ⅴ. 向後展望 및 示唆点

1. MAI協商 妥結以後 外國人의 投資展望

MAI가 타결될 경우 한가지 분명한 점은 우리나라의 外國人投資增大를 위한 對外的 與件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다. MAI 협정국이 된다는 것은 외국인투자가 입장에서 볼 때 국내에 투자한 자산의 안전과 차별없는 대우가 국제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인 내국민대우 이외에도 앞에서 예시한 것과 같은 사실상의 내국민대우와 관련한 투자장애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경우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성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의 투자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된다. 즉, MAI가 타결될 경우 국제투자의 상당부분은 MAI 협정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MAI 협정국 중 기존의 OECD 회원국 상호간에는 이미 상당수준의 투자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23] 새로운 투자대상국은 최근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와 멕시코 및 동구권을 비롯한 수개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보험시장규모나 성장성 등은 제쳐두고라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국가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OECD 회원국이기 때문에 투자여건만 보다 개선된다면 투자대상국으로서의 매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년말의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기진출한 외국사의 증자나 국내보험사에 대한 자본참여, 그리고 IBRD와 IFC 등 국제금융기관이 국내보험사에게 보인 관심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은 증명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높은 시장집중도나 모집인의 높은 판매비중으로 인하여 신설사의 영업기반확보가 어렵다는

---

23) UN의 통계에 따르면 1996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중 선진국간의 투자는 2,082억달러로서 전체 3,492억달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점 등을 감안할 때 자회사나 지점설립을 통한 신규진출보다는 기존사의 인수 또는 지분참여나 합작사의 경우 지분확대 또는 국내합작사의 지분 매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보험사와 은행 등 타금융권간의 자회사설립을 통한 상호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에 진출후 보험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도 중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외국인투자는 5대재벌의 생명보험업진출과 맞물려 國內 生命保險産業을 기존사와 신규진입 재벌계열의 보험사 그리고 외국계보험회사의 시장구조로 재편시키게 될 것이다.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그동안 내국인과의 신규합작이나 자회사형태로의 외국사진출을 제한해왔기 때문에 현재 외국보험회사는 지점 및 사무소형태로만 진출해 있다. 그러나 「保險會社設立許可基準」의 제정과 더불어 MAI가 타결될 경우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성장성 등을 감안할 때 자회사 또는 신규합작사의 설립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과 장기성 가계보험의 경우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신설사의 영업기반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적은 지점이나 기존에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기존사에 대한 지분참여 등의 형태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한편 금년부터 保險仲介業이 대외개방됨에 따라 축적된 언더라이팅경험과 고도의 위험관리기법을 구사하는 외국의 대형보험중개인의 국내진출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가격협상력과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제공 등을 통하여 생명보험의 단체보험과 손해보험의 기업성보험 및 재보험시장을 잠식해나갈 것이다. 특히 재보험시장의 경우 ’97년 4월부터 화재 및 특종보험에 대한 「國內社優先出再制度」 및 「保險料率求得에 관한 協定」이 전면폐지됨으로써 완전자유화되었을 뿐만아니라 재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중개인을 통한 외국사와의 보험계약체결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외국사의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示唆点

우리나라는 OECD 가입시 단기자본이동을 유발하는 포트폴리오 투자, 경쟁력이 취약한 금융부문 등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문의 시장을 개방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IMF 지원자금 요청과 관련한 IMF와 우리나라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 및 단기채권투자,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외국금융기관의 인수합병 허용 등 대폭적인 市場開放措置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폭적인 시장개방조치와 맞물려 향후 MAI가 타결될 경우 보다 투명한 투자환경이 보장됨으로써 자유경쟁체제에 익숙한 외국인의 投資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제공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보험시장에도 그 동안 주로 틈새시장공략에 치중해왔던 기존의 외국계보험회사들과는 달리 대규모자본과 선진기법을 토대로 보다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구사하는 외국계보험회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며, 국내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수시장에서의 競爭壓力의 增大에 따라 내수시장에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보험회사들의 경우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은 곧 시장에서의 퇴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적대적 M&A 허용에 따라 일부 경영구조가 취약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경영권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競爭深化와 M&A의 가능성증대는 국내보험회사들로 하여금 경영합리화 노력을 강화하게 할 뿐만아니라 비효율적 기업의 시장에서의 퇴출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MAI 체제하에서 국내보험회사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그 동안 국내보험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누누이 지적된 바와 같이 조직이나 영업, 상품개발, 자산운용 등 제분야

에서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별로 자사 실정에 맞는 경영전략의 차별화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국내보험회사는 영업규모나 담보력 등에 상관없이 모든 회사가 거의 획일적인 경영전략을 구사하여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특히 중소형사들의 경우 보험종목별 향후 市場規模, 成長性, 收益性, 費用構造 및 판매채널에 대한 분석과 경쟁사 및 고객의 욕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자사의 강점 및 약점에 競爭優位를 分析함으로써 경쟁력있는 특정종목이나 특정고객을 발굴하고 그러한 틈새시장에 대해 기업내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특화전략을 통해 대형사와의 차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증대에 따른 국내보험시장의 경쟁심화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세계적인 종합금융화추세하에서 타금융권과의 차별적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보험회사들의 경우 재무건전성 제고나 향후 성공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이러한 특화전략이 더욱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인수합병이나 외국자본과의 합작 또는 타금융업무로의 확장을 통해 종합금융회사로의 발전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세계적인 외국보험회사 또는 타금융권과의 경쟁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사에 대한 진입규제는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더욱이 MAI체제하에서는 정부가 내수시장을 외국기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내보험회사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쟁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스스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당국에서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투명한 정책을 수립·집행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정책당국이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시행한

保險市場自由化計劃은 외국인투자를 확대한다기보다는 관련산업을 보호하는데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는 안정된 외국자본의 유입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쟁의 촉진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MAI 의무조항에 관한 국별 유보수준 협상시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유보논리가 없는 유보사항에 대해서는 철회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MAI 타결 이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에 대비하여 비록 외국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조치는 아니더라도 市場構造나 制度上의 特徵 등에서 기인하는 경쟁력차원의 비공식적 투자장애요인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WTO, OECD, MAI 협상과정에서의 규제완화조치로 보험사업에 대한 각종 리스크가 증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그만큼 위협을 받게될 것이다. 이에 따라 MAI체제하에서도 건전성규제는 예외로 인정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도 契約者保護를 위한 감독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시제도, 지급여력제도, 보증기금의 확충 등 보험회사의 財務健全性에 대한 규제(prudential regulation)는 국제적 정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參 考 文 獻 >

구본성, 「다자간투자협정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보험개발연구』, 1997년 3호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관련 법규집』, 1998. 4

김관호, 「MAI의 의의와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겨울.

김병연, 김병덕, 『금융기관 진입기준의 재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8. 6.

김희성,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제』, 1997. 12

보험개발원, 『일본 신보험업법』, 1995. 8

보험개발원, 『주요국의 보험자산운용 규제 및 현황』, 1996. 1

생명보험협회, 『구미각국의 생명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규제』, 1994.5

이장영, 「금융서비스 관련장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7

———, 「MAI 협정가입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상호신용금고』, 1997. 10

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 국제투자과,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 추진상황 및 주요내용, 1997. 4. 14

————————————————, 제18차 OECD 다자간투자협정(MAI) 회의 결과, 1997. 11. 6

———————————, 제17차 OECD 다자간투자협정(MAI) 회의 결과, 1997. 9. 23

정재욱외,『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보험개발원, 1998.3.

조강필, 정영철,「OECD가입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고찰」,『보험조사월보』, 보험감독원, 1996. 7.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 다자협상담당관실, OECD 각료이사회 보도 참고자료 1997. 5. 24.

한국경제연구원,『OECD가입과 한국경제의 자유화』, 1996

한국은행 국제부 외환기획과,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우리의 대응,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기법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1997. 10. 1

황진우,「OECD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우리의 대응」,『한화경제』, 1997. 5

Directorate For Financial, Fiscal and Enterprise Affairs, *The MAI Negotiating Text*, OECD, 1998. 4

Nuttney, Andrew, *The Marketing and Distribution of European Insurance*, Datamonitor, 1995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1988-1995, 1997* ed.

<附錄 1> 多者間投資協定文(MAI)(案)의 主要內容

1. 範圍와 適用(Scope and Application)

가. 投資家(Investor)의 定義

- 締約國(Contracting Party : MAI에 가입한 국가, 이하 같음)의 법률에 따라 국적을 보유하거나 당해국에서 영구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동 법률에 의해 조직·구성된 법인 또는 기타 실체[1].

나. 投資(Investment)의 定義

- 투자가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지배되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
  - ·一般企業(enterprise) : 체약국의 법률에 의해 조직·구성된 법인 또는 기타 실체로서 영리기업, 비영리기업, 민영기업·국영기업을 불문하며 주식회사, 신탁회사, 합명회사, 개인회사, 합작회사, 지점(branch), 협회 및 조직을 포함.
  - ·주식, 증권 또는 기타 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및 이로 인해 보유한 권리.
  - ·각종 채권(bonds and debentures), 대출, 기업의 기타 부채 및 이로 인해 보유한 권리.
  - ·완성품인도(turnkey)·건설·경영·생산·이윤배분계약을 포함하는 계약상의 각종 권리.

---

1) 영리기업·비영리기업, 민영기업·국영기업을 불문하고 주식회사(corporation), 신탁회사(trust), 합명회사(partnership),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합작회사(joint venture), 협회(association) 및 조직(organization)을 포함.

· 예금 · 파생상품 등 금전청구권과 성과(performance)에 대한 청구권
· 지적재산권 및 특허 · 면허 · 인허가 등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부여된 권리.
· 유무형 및 이동 · 비이동성 자산과 리스 · 저당 · 담보 · 보증 등의 재산권.

- 다만 간접투자, 지적재산권, 특허(concessions), 공공부채(public debt) 및 부동산을 투자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미확정.

다. 適用範圍

- 체약국의 영토, 영해 및 국제법에 따라 주권 및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상지역에 모두 적용.

2. 投資와 投資家에 대한 待遇(Treatment of Investors and Investments)

가. 內國民待遇(NT : National Treatment)

- 체약국은 투자의 설립, 취득, 운영, 처분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다른 체약국의 투자가 및 투자행위에 대하여 최소한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함.

나. 最惠國待遇(MFN :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체약국은 투자의 설립, 운영, 처분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 특정 체약국의 투자가 및 투자행위에 대하여 최소한 여타 체약국의 경우와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함.

다. 透明性(Transparency)

- 체약국은 MAI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제, 절차, 행정적 결정, 일반적 효력 등을 갖는 사법적 판결, 국제협정 등을 일반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출판하거나 공지하여야 함.

라. 特殊義務條項(Special Topics)

- 核心人力(Key Personnel) : 체약국은 투자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력(투자가, 전문기술자, 임원 등)의 임시입국, 체류 및 취업을 허용.
  - · 또한 노동시장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해 수요심사를 요구하거나 인원제한(numerical restriction)을 할 수 없음.
  - · 다만 투자대상국의 이민법, 노동법 등은 우선 적용.
- 履行要件(Performance Requirements) : 투자대상국이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일정비율 수출의무, 일정비율의 국산품 사용의무, 일정 수출입비율의 유지의무, 기술이전의무, 국내지역에의 본사 유치의무, 일정수준의 내국인고용의무, 합작회사 설립의무 등 영업과 관련된 각종 제한을 부과할 수 없음.
- 民營化(Privatization) : 민영화 과정 및 민영화와 관련된 제반조치에 있어 체약국은 외국인투자가를 내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함.
  - · 민영화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명시할 경영정보공시의무조항의 내용,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민영화된 자산의 소유·지배에 관한 특별지분부여(special share arrangements)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
- 獨占 및 國營企業(Monopolies/State Enterprises) : 독점의 지정 및 해법

과 관련하여 체약국의 주권을 인정[2].

· 다만 독점을 지정한 경우 독점기업은 정부의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제품판매 및 구매행위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차별할 수 없음.

- 투자 인센티브(Investment Incentives) :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에 있어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

· 다만 협정문의 여타 규정으로도 투자인센티브가 충분한 데다 세금공제와 같은 인센티브의 제공은 자본흐름 및 투자결정을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

3. 投資保護(Investment Protection)

가. 一般待遇(General Treatment)

- 외국인 투자자산을 국유화하거나 전쟁·폭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의무화.

나. 强制沒收 및 報償(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 강제몰수 및 국유화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비차별적 기준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또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이 경우 충분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상액은 몰수 직전의 시장가치와 동등하고 換金性 및 讓渡性이 있어

---

2) 이 조항은 MAI의 報償義務 및 市場接近(market access)과 관련하여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부분의 내용이 미합의된 상태임.

야 함.

다. 海外移轉(Transfer)

- 체약국은 외국인투자가의 투자관련 자금[3]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

라. 損害賠償(Subrogation)

- 체약국이 협정위반으로 다른 체약국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가의 손실에 대해서도 변상 또는 보상토록 의무화.

마. 旣存投資 保護(Protecting Existing Investments)

- 협정 발효전에 이루어진 기존투자에 대해서도 본 협정규정을 적용.

4. 紛爭解決(Dispute Settlement)

- 특정 체약국이 MAI 협정문상의 의무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여타 체약국은 물론 투자가가 직접 당해국을 상대로 원상복귀, 협정이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가. 國家間 紛爭解決(State-State Procedures)

- 一般規程(General Provisions) : 당사국이 다른 규정 또는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체약국간 분쟁 및 갈등은 다음에서 정하는 협의, 화해, 중재 및 조정절차에 따라 처리.

---

3) 초기 및 추가자본, 각종 계약금, 판매 또는 청산수익, 분쟁해결에 따른 변상금, 보상금 등.

· 다만, 당사국 및 분쟁해결에 참여하는 자는 그 처리과정에서 기밀 또는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

- 協議, 和解 또는 仲裁(consultation, conciliation or mediation) : 국가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국은 상대국에 대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에 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일로부터 60일간의 협의기간을 거치되 60일 이내에 당사국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정사무국(Parties Group)[4]에 다자간협의(multilateral consultation)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사무국은 60일 이내에 심의를 종료해야 함.
  · 협의를 통해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정사무국 등에 의한 화해 또는 중재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협의, 화해 또는 중재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비밀로 함.

- 仲裁(arbitration) : 충분한 협의절차[5]를 거친 당사국은 구속력있는 결정을 위해 중재심판소(arbitral tribunal)[6]에 중재(재판)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재심판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중재심판소는 먼저 권고안(provisional measures)을 제시하고 당사국의 의견을 들어 최종결정(final awards)을 하게 됨.
  · 만약 일방이 동 결정을 거부하게 되면 상대국은 협정사무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사무국은 불응국가에 대해 사무국 회의에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당해국이 동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

4) 協定事務局은 협정규정의 해석과 그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는 기구로서 가입국(Contracting Parties)대표로 구성됨.
5) 협의요청을 하지 않거나 60일간의 협의기간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없음.
6) 仲裁審判所는 분쟁 당사국이 30일 이내에 상호합의에 의해 지명한 3명의 위원(이중 1명은 의장)으로 구성됨.

데 노력해야 함.

나. 投資家/國家間 紛爭解決(Investor-State Procedures)

- 협정위반국과 다른 체약국의 투자가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協商(negotiation) 또는 協議(consultation)에 의해 해결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정위반국의 법원 또는 행정심판소에 직접 제소하거나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 특히 금융부문 분쟁의 경우 분쟁남용으로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가·국가간의 금융분쟁에 대해서는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패널을 구성하여 금융당국간에 우선 협의토록 한다는 데 원칙 합의.
- 다만, 健全性規制에 대해서는 투자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
  - · 통화·환율정책 및 일시적 긴급제한 조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도 투자가·국가간 분쟁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음.

5. 例外 및 一時的 緊急制限措置(Exceptions and Safeguards)

가. 一般的 例外

- 체약국은 동 협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목적[7], UN헌장에 의한 국제평화·안전의 유지 및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안보상 이익에 반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7) 전시상황, 내란상태 또는 핵무기 확산금지 등의 국제합의와 관련된 사항.

나. 通貨 및 換率政策과 관련된 去來

- 체약국의 경제금융정책의 독자성 및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통화·환율정책과 관련된 거래[8]에 대해서는 협정규정(NT, MFN 및 투명성 원칙 등)의 적용을 배제(carve-out)한다는 원칙에 합의.

다. 一時的 緊急制限措置(Temporary Safeguard)

- 국제수지 위기상황이나 급격한 자본이동으로 인한 巨視經濟攪亂이 발생할 경우 해외이전(transfer) 관련 기본거래 및 자본유출입에 대해 6개월 미만의 일시적인 긴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조치는 모든 체약국들에 대해 비차별적이고 IMF협정에 부합[9]되어야 하며 다른 체약국의 상업적/경제적/금융적 이해관계에 불필요한 손실(unnecessary damage)을 입혀서는 안됨.
- 또한 동조치의 남용은 금지되며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동 조치를 지속적으로 완화·폐지해 나가야 함.
- 동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협정사무국에 즉각 통보하여야 하며 동 사무국은 당해국 국제수지 위기의 성격·범위, 대외적인 금융·경제여건 및 다른 제정조치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국에 권고안을 제시.
- 한편, 동거래가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투명성 의무조항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협정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음.

---

8) 동 거래를 open market transactions 및 外換介入去來에 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9) 適格判定은 IMF의 결정 및 판단을 우선하고 IMF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IMF협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함.

6. 金融서비스(Financial Services)

가. 健全性規制(Prudential Measures)

- 체약국이 금융제도의 안전성, 완전성(integrity)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취하는 건전성 규제조치를 인정.
  · 다만, 동 규제를 협정이행의 회피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

나. 相互認定(Recognition Arrangements)

- 체약국은 다른 국가(비회원국을 포함)와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여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건전성 규제를 상호 인정할 수 있음.

다. 透明性(Transparency)

- 체약국은 외국인투자가의 개별고객정보나 공익에 반하는 기밀문서 등을 공개할 수 없음.

라. 情報移轉 및 處理(Information Transfer and Data Processing)

- 금융기관이 정상적인 경영활동 또는 금융정보(정보처리서비스를 포함)의 판매 및 구입을 목적으로 정보를 해외에 전송하거나 해외에서 자료를 처리함에 있어서 체약국은 이에 대한 제한을 금지.
  · 다만 개인자료(personal data), 사생활(personal privacy), 개인비밀(기록 및 계좌)의 보호를 위한 규제조치는 인정.

마. 自律規制機構에의 加入(Membership of Self-regulatory Bodies and Associations)

-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청산소, 기타 협회에의 가입이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요건이 되거나 가입 금융기관에 대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특혜를 부여할 경우 체약국 정부는 다른 체약국 금융기관의 자율규제기구 가입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해야 함.

바. 支給決濟制度 및 最終貸付者機能(Payments and Clearings Systems/Lender of Last Resort)

- 지급결제시스템에의 접근에 있어서 체약국은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
  - ·다만, 이는 체약국의 최종대부자 기능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7. 租稅(Taxation)

- 강제몰수 및 투명성 관련조항을 제외하고는 체약국의 조세조치를 인정.

8. 實行과 運營(Implementation and Operation)

- 동협정에 최초 가입하는 국가들(Signatories)로 준비국(Preparatory Group)을 구성하여 협정의 발효와 협정사무국의 설립을 준비하고 추가체약국에 대한 협상의 진행 및 적격성을 심사[10].

---

10) MAI는 개방된 獨立的 性格의 協定이므로 가입심사시에는 국별 최소기준점(minimum benchmark)을 감안하여 의무이행능력이 있는 모든 비회원국에 가

9. 終結條項(Final Provisions)

- 협정의 효력은 최종 합의안에 대한 체약국의 조인(signature) 및 당해국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 발생하며 탈퇴는 협정발효일로부터 5년 경과후 가능.
  - · 다만, 탈퇴 당시의 현지투자에 대해서는 탈퇴 통고일로부터 15년 동안 협정이 유효.

입을 허용.

< 著 者 略 歷 >

鄭 榮 喆

西江大學校 商學 碩士

現 保險開發院 保險硏究所 金融硏究팀 先任硏究員

韓 星 眞

梨花女子大學校 英語英文學科 卒業

現 保險開發院 保險硏究所 金融硏究팀 硏究員

硏究調査資料 98-5

MAI協商의 進展과 國內保險産業에의 示唆点

발 행 일	1998년	8월	일
발 행 인	김	승	제
편 집 인	이	명	주
발 행 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368-4000		
인 쇄 소			
	대표전화 715-5497		

ISBN 89-88001-16-8 93320 定價 10,000원